

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제4차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면 사전에 보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제2항)
- 나.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. (안 제10조제2항)
- 다. 보조사업의 경비 배분 변경, 사업의 인계,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하던 것을 사업자가 발생 즉시 신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제1항)
- 라.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할 경우 처분의 종류를 구체화 함. (안 제15조)
- 마. 보조사업자의 신고사항으로써 1~2호의 내용은 제9조, 제12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, 4호는 관리차원에서 행정기관의 편의적인 사항으로 규제를 없애고자 함. (안 제16조)
- 바.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7조)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(공공기관의 범위등) 제3항이 규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지 방 제 정 법

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지 방 제 정 법 시 행 령

제24조(공공기관의 범위)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